

미국의 외국법자문사제도

I. 들어가며

2011년 11월 22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후, 2012년 3월 15일부로 한국과 미국 간의 FTA는 발효 중에 있다. 한미 FTA 이행의 내용으로 한국 법률시장 개방이 포함되어 있다. 법률시장은 3단계 개방에 의해 진행되며, 2017년 3단계 개방이 되면 외국로펌이 국내로펌과 조인트 벤처 로펌을 설립, 이를 통해 국내변호사를 고용하고 한국법 사무를 다룰 수 있는 단계가 되며, 따라서 법률시장 개방 1, 2단계보다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외국법자문사법은 법률시장 개방 및 외국변호사의 한국에서의 외국법자문사 등록절차, 권한 및 한계 등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외국법자문사제도를 먼저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외국법자문사 관련 규정을 살펴보는 것은 시의성을 가진다는 생각이다.

II. 미국의 외국법자문사제도를 이해를 위한 주요 배경

1. 미국에서 등록 외국법자문사의 일반적 개념

등록 외국법자문사(Registered Foreign Legal Consultant)는 외국에서 적격한(good standing)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고 있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외국법자문사(Foreign Legal Consultant)로 해당주 자격 발급기관에 의해 자격이 부여된 자를 의미한다.¹⁾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 홈페이지에 당해 주로부터 등록 외국법자문사 자격을 취득한 자의 이름 및 연락처 등을 소개하고 있으므로, 주 내 해당 외국법전문가의 파악이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한국을 포함, 아르헨티나, 호주, 벨기에, 불가리아, 중국, 캐나다, 이집트, 엘살바도르,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스, 홍콩, 인도, 이란, 러시아, 대만 등에서 온 등록 외국법자문사가 활동

1) The State Bar of California, Office of Admissions, Foreign Legal Consultant Program (Feb. 2014).



하고 있다.²⁾

2. 외국법자문사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 과정

1) 발단: 뉴욕 주의 In Re Roel 사건

섭외적인 법률서비스에 대한 미국 내에서의 수요³⁾ 등으로 인해 1920년대부터 외국법자문사제도에 관한 제안이 있어 왔다.⁴⁾ 섭외상사중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외국법에 대한 자문이 필요했고, 미국 내에 위치한 외국인을 위한 가사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원칙적으로 당국으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하며(New York Judiciary Law §478), 외국법자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초기에는 이러한 외국법자문이 면허 없이 이루어져왔다. 이로 인해 무자격 외국법자문이 문제시 되었으며, 등록 외국법자문사의 필요성에 대해 주목을 받

게 된 사건은 뉴욕 주 항소법원(The Court of Appeals)의⁵⁾ “In Re Roel (1957)” 사건이다.⁶⁾

동 사건은 외국법자문사제도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는데 일조했다. 동 사건에서 Roel은 멕시코 변호사로 뉴욕변호사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맨해튼에서 사무실을 열고, 일반인에게 멕시코법에 대한 자문을 하고, 뉴욕 주 변호사들에게까지 멕시코법 관련 자문을 하였다. Roel은 뉴욕 주 변호사협회 소속 및 등록되어 있지 않은 멕시코변호사로 뉴욕 주 법정에서 멕시코법 관련 전문가 증언을 한바 있다. 뉴욕 주 항소법원은 Roel의 이와 같은 미자격 법률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반면, 동판결의 소수의견은 뉴욕 주에서 외국법전문가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언급했으며, Roel 판결에 대한 대응으로 위와 같은 문제점에 관한 다양한 제안서가 만들어졌으나 입법화되지는 않았다. 1970년대까지 이 분야에 대한 법 또는 규정제정이 없었다. 1974년 4월 뉴욕 주 입법부는 Plimpton

2) See, The State Bar of California, Foreign Legal Consultants List, available at <http://admissions.calbar.ca.gov/Requirements/ForeignLegalConsultants-FLC/ForeignLegalConsultantsList.aspx>.

3) 국제상거래분야로는 (1) 계약 및 거래, (2) 외국투자 및 지역법자문, (3) 국제간 은행업 및 자본, (4) 국제 경제법, (5) 국제 중재 및 소송, (6) 국제 조세 계획, (7) 통상법 등이 있다. Roger J. Goebel, Professional Qualification and Educational Requirements for Law Practice in a Foreign Country: Bridging the Cultural Gap, 63 Tulane Law Review 443, 447(1989).

4) 뉴욕에서 외국법자문사제도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로는 Sidney Gibetz, Legal Consultants in New York, The Bar Examiner, pp. 6-9 (May 1998).

5) 일반적으로 주 대법원의 경우 Supreme Court라고 불리는데, 이색적으로 뉴욕 주 최고법원의 경우 ‘The Court of Appeals’로 표기되며, 직역하면 ‘항소법원’이라고도 불릴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뉴욕 주 최고법원 역할을 하고 있다.

6) In Re Roel, 3 NY 2d 224 (1957).

Committee의 제안서를 수락하고, Judiciary Law (6)을 채택하였다. 동 법에 근거 항소법원은 1974년 6월 6일, 외국변호사의 외국법자문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수여 관련 22 NYCRR 규정을 제정하였다.

2) 외국법자문사를 시행하고 있는 그 밖의 주

대략 10년 후(1986년) 워싱턴 DC는 외국법자문사제도를 채택한 두 번째 주리스딕션(jurisdiction)이 되었다.⁷⁾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본이 등록 외국법자문사제도를 허용하면서, ‘상호인정’을 그 조건으로 내걸었다.⁸⁾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하와이, 미시간, 텍사스 등이 외국법자문사제도 규정을 제정하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등은 법률서비스의 국경을 더욱 확대시키는 역할을 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외국법자문사 규정을 채택하는 주의 숫자는 늘어났다. 1993년에 이르러서 미국변호사협회

(American Bar Association)는 모범규칙(Model Rule)을 제정하여 외국법자문사의 윤리강령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개별 주가 이를 어느 정도로 활용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해당주가 판단할 부분이다. 동 규정의 정식명칭은 ‘ABA Model Rule for the Licensing and Practice of Foreign Legal Consultants’이고 면허발급에 관한 일반적 규정(§1. General Regulation as to Licensing), 지원방법(§2. Application), 업무범위(§3. Scope of Practice), 권리와 의무(§5. Rights and Obligations)등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⁹⁾

현재 33개의 주가 외국법자문사제도 규정을 가지고 있다.¹⁰⁾ 미국에서 외국법자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주로는 아칸소,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커네티컷, 델라웨어(Rule 55.2), DC, 플로리다, 조지아, 하와이, 아이다호, 일리노이스, 아이오와, 인디애나, 로스앤젤레스, 매사추세츠, 마이애미, 미네소타, 몬태나, 뉴햄프셔,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노스 다코다, 오하이오,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유타, 버지니아, 워싱턴이

7) 외국법자문사제도에 관한 초기연구로는 Carole A. Needham, The Licensing of Foreign Legal Consultants in the United States, 21 Fordham International Law Journal 1126 (1997).
 8) 일본의 외국변호사 진출에 관한 초기 연구로는 Masako C. Shiono, Foreign Attorneys in Japan: The International Practice of Law as a Question of Unfair Trade Practices, 2 American University International Law Review 615 (1987).
 9) 동 규정의 개별조항은 미국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검색가능: <http://www.americanbar.org/content/dam/aba/migrated/cpr/mjp/FLC.authcheckdam.pdf>.
 10) Laurel S. Terry, Admitting Foreign-Trained Lawyers in States Other than New York: Why It Matters, The Bar Examiner, p.40, December 2014.



포함된다.

3) 외국변호사가 미국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할 수 있는 방법

외국변호사가 미국에서 실무(practice)에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1) 외국법자문사 규정(foreign legal consultant rule)에 따라 제한된 영역에서의 프랙티스 참여, (2) 외국변호사에게 섭외적인 사안에 대해 제한된 기간에 프랙티스를 허용해주는 규정에 의해, (3) 특별히 가 법정대리(pro hac vice admission), (4) 외국변호사가 기업 내 변호사(in-house counsel)로 일할 수 있게 허가해 주는 규정 등에 의해 외국변호사가 제한적으로 법무에 관여할 수 있다.¹¹⁾

III. 외국법자문사 규정의 주요내용 - 뉴욕 주와 캘리포니아 주를 중심으로

한국의 외국법자문사법과 같이 미국 전역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외국 변호사를 규율하기 위한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외국변호사의 제한적 업무 허용에 관해서

는 각 주별로 법 또는 규칙을 통하여 시행된다.

다만,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는 상기한 것처럼 ‘ABA Model Rule for the Licensing and Practice of Foreign Legal Consultants’를 제정, 모든 주가 공유할 수 있는 사안들을 기술하여 하나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했다.

지면 관계상 모든 주의 제도를 검토하는 것은 어려우며, 다수의 외국법자문사가 활동하고 있는 미국 주요 주(뉴욕 주와 캘리포니아 주)의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등록 외국법자문사의 업무범위

대부분 주의 등록 외국법자문사의 업무범위는 ‘원자격부여 국가의 법에 국한’하여 자문이 제한된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외국법자문사에게 허용되지 않는 업무의 구체적 예를 명시하고 있으며, 다음의 업무는 제한된다.¹²⁾

- 자신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법정, 치안판사 및 기타 사법 공무원 앞에

11) *Id*

12) 제한되는 업무의 구체적 예시는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 자료 참조, Foreign Legal Consultant Frequently Asked Questions (FAQS), available at <http://admissions.calbar.ca.gov/Requirements/ForeignLegalConsultantsFLC/FAQ.aspx>.

서 변호사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법원 및 사법공무원에게 제출할 청원서 등의 문서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
- 양도증서, 저당, 전세 등 미국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미국에 위치한 재산의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언장 및 신탁 문서 작성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혼인관계 및 자녀 양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서 준비작업을 할 수 없다.
- 캘리포니아 주법, 타주 및 원자격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법 관련 문서작업 및 기타 전문적인 법률조언이 금지된다.

2. 등록 외국법자문사 지원 절차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외국법자문사 적합성 평가 등 일정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후 외국법자문사 자격이 부여된다. 뉴욕 주의 경우 다음의 과정을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¹³⁾

- 제1단계: 연방항소법원 규칙(Rules of

the Court of Appeals) part 521 및 제2항상소부 규칙 (Rules of the Appellate Division, Second Department) part 692를 바탕으로 자신이 기본적인 자격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검토한다.

- 제2단계: 뉴욕 주 변호사 적합성평가위원회(Committees on Character and Fitness)에 필요한 지시 사항 및 지원서 양식을 요청한다.
- 제3단계: 적합성평가위원회에 작성이 완료된 지원서 및 입증자료를 제출한다. 이때 개인 기록보존을 위해 지원서 패키지의 사본을 가지고 있기를 권장한다.
- 제4단계: 적합성평가위원회는 자격심사를 하고, 심사가 완료될 시, 동 위원회 평가관과의 면접 일정이 통보된다. 불충분한 서류가 제출되었을 시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에 관한 정보가 서면으로 통지된다.
- 제5단계: 적합성평가위원회의 평가관과의 인터뷰에 출석한다.
- 제6단계: 등록 외국법자문사(Licensed Foreign Legal Consultant)로서의 선서식에 참여한다. 서류제출 및 적합성평가위원회의 평가관과 인터뷰를 마친 후, 선서를 위한 항소부 법원에 출석할 일시가

13) 등록 외국법자문사 지원 절차에 관해서는 다음 자료 참조.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Appellate Division: Second Judicial Department, How to Apply for Licensure as a Foreign Legal Consultant, available at <https://www.nycourts.gov/courts/ad2/pdf/How%20to%20Apply%20for%20Licensure%20as%20a%20Foreign%20Legal%20Consultant.pdf>.

통지된다.

3. 클레임 대비 보증 (Security for Claims) – Rule 3.403

등록 외국법 자문사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작위, 부작위, 실수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소송을 포함하는 이의제기(claim)에 대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보증 수단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¹⁴⁾ 동 보증을 위한 자산은 상시 유지되어야 하며, 주 변호사회는 어느 때라도 현재 유지되고 있는 클레임 대비 보증의 증거를 요구할 수 있다. 요구되는 증거는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 보험 증서, 신용장, 보증서(Written Guarantee)
- 주 변호사 협회에서 수락 가능한 형태여야만 하며
- 미국 달러로 계산될 수 있어야 한다.

4. 클레임 대비 보증으로서 보험 (Insurance as Security for Claims) – Rule 3.404

클레임에 대한 보증 수단으로서 보험에 가입했을 시, 주 변호사 협회는 외국법자문사에게 연간 보험금의 총액과 최대 면책금액(maximum deductible)에 관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 당해 보험이 방어 비용(cost of defense)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등록 외국법자문사는 일람표(Schedule)에 명시된 연간 보험의 최소총액을 감경할 수 있다.
- 보험이 일람표에 명시된 것보다 큰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외국법자문사는 그 감면금에 대한 보증의 증거로서 신용장 또는 서면 합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 캘리포니아 밖에 있는 보험업자에 의해 제공된 보험의 경우, 주 변호사협회의 요청이 있을 시 즉각적으로 보험증서 사본을 제공해야 하며, 영어가 아닌 문서라서 번역이 필요한 경우 번역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5. 서면보증 (Written guarantee as security for claims) – Rule 3.406

서면보증이 클레임에 대한 보증의 수단

14) Rules of the State Bar, Title 3. Programs and Services, Division 3. Non-Member Attorneys, Chapter 4. Foreign Legal Consultants하에 캘리포니아 등록 외국법자문사 관련 규정을 담고 있으며, 동 규정에 대해서는 이하 'Rule'로 표기한다. 클레임 대비 보증에 대한 증거 요구조항은 Rule 3.403에서 기술한다.

으로 이용되는 경우, 외국법자문사는 일람표(Schedule)에 구체적으로 개별 소송 및 연간 모든 소송에 필요한 보증금을 명시하는 데로 유지해야한다.

- 보증인은 캘리포니아 로펌, 법률회사, 캘리포니아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또는 금융기관이 될 수 있다.
- 서면보증은 독립된 회계사의 자산진술과 가장 최근의 연간 유형 순자산(tangible net worth)이 클레임 보증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액과 동등함을 입증하여야 하며, 면허, 특허(patents), 상표권, 거래명, 저작권과 같은 무형의 자산은 배제한다.

6. 자격이 정지되는 상황 (Suspension of Registration as a Foreign Legal Consultant) – Rule 3.408

다음의 경우 외국법자문사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 외국법자문사로 매년 등록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와 규정(Schedule of Charges and Deadlines)에 의해 지정된 날짜까지 관련 부과금 및 벌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관련규칙, 법 또는 변호사에게 적용되는 변호사 업무 규칙 등에 위반되는 행

위를 하는 경우.

- 면허 발급기관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동 규정 하에 자격이 정지된 외국법 자문사는 자격정지 기간동안 법실무참여가 허용되지 않는다. 등록의무 규정 위반 외국법자문사는 요구사항 충족 시 자격이 복귀될 수 있다.

자격정지 공지는 접수날짜로부터 10일째 그 효력이 발생한다. 캘리포니아 주소는 우편발송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면 접수한 것으로 추정한다. 미국의 다른 전역의 경우는 우편발송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접수한 것으로 추정하며, 미국 외의 주소는 우편발송 후 20일 경과 시 접수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별적으로 당해 외국법자문사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도 물론 또 다른 의미의 접수이다.

자격정지조치에 대한 이의제기(appeal)는 주 변호사협회의 징계절차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IV. 시사점

미국에서는 상기한 것처럼 뉴욕 주에서부터 외국법자문사제도가 시행되었다. 이후 여러 주에서 추가로 시행, 현재 33개 주에서 외국법자문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외



국법자문사제도는 외국변호사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면허를 발급함으로써, 동 주로 외국 변호사의 유입을 유도하고, 이들이 원 자격국가와 해당 지역 간의 비즈니스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분석한다.¹⁵⁾

국제질서 또한 미국에서 외국법자문사제도의 확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과 같은 다자간 조약은 국경을 초월하는 법률서비스의 필요성을 더욱 높게 인식시키게 하는 계기를 부여하고 있고, 이러한 조약은 변호사집단 간의 상호협력을 권장하고, 그들 사이에 놓여있는 장벽을 낮추는 노력을 유도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법률시장 개방의 역사는 우리 보다 길며,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해외 공략 목표국가로 하여금 법률시장개방을 요구하기 위해서 개방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미국의 법률서비스 산업의 경우 개방 압력을 받고 있는 여러 다른 국가와는 달리, 미국 내외에서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¹⁶⁾ 미국 상위 200개 로펌(Am Law 200 firms)의 25,000명 이상의 변호사가 70개국 이상 미국밖에 위치한 법률

사무소에서 활동 중이며, 최근 중국과 중동의 법률시장 성장도 미국의 해외 법률시장 확장에 이바지하고 있다.¹⁷⁾

〈표 1〉 2013년 총수입 기준 상위 10개 로펌¹⁸⁾

(단위 : 10억 달러)

순위	로펌명	총수입	국가
1	Baker & McKenzie	\$2.54	미국
2	DLA Piper	\$2.48	영국
3	Latham & Watkins LLP	\$2.29	미국
4	Skadden, Arps, Slate, Meagher & Flom LLP	\$2.23	미국
5	Clifford Chance	\$2.13	영국
6	Kirkland & Ellis LLP	\$2.02	미국
7	Linklaters	\$1.96	영국
8	Allen & Overy	\$1.93	영국
9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1.92	영국
10	Norton Rose Fulbright	\$1.9	영국

법률시장 상호개방이라는 시장 경제적 측면의 분석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조인의 협력을 통해 필요한 최신 외국법

15) Sidney Gribetz, Legal Consultants in New York, The Bar Examiner, p.9, May 1998.

16) 국제화에 대비해 미국 법률가 및 법학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에 대한 연구로는 Carole Silver, Getting Real about Globalization and Legal Education: Potential and Perspectives for the U.S., 24 Stanford Law & Policy Review 457 (2013).

17) Jennifer Smith, Global Law Firms Chart Slow But Steady Growth, The Wall Street Journal Law Blog, Sept, 29, 2014, available at <http://blogs.wsj.com/law/2014/09/29/global-law-firms-chart-slow-but-steady-growth/>.

18) *Id*

의 도입이 용이하고, 특히 미국은 판례법 국가(case law)이므로 사실관계(fact)에 대한 다각도 분석 시 외국 법률가의 다양한 시각이 도움이 될 수 있다.¹⁹⁾ 섭외적인 시각을 포함한 법률해석이 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는 연방대법원 구성원들도 인정하고 있다. 동법원의 Stephen Breyer 대법관은 우리가 세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문제점에 부딪혔을 때 유사한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언급과 함께, 외국법률분석의 참고 가치 중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바 있다.²⁰⁾ 이와 같은 풍부한 법률해석은 섭외적인 배경을 가진 외국법자문사의 수가 많아질수록 그 범위가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²¹⁾

한국의 경우 외국법자문사법의 제정 후 외국법자문사-제도의 시행은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았다. 반면, 미국 외국법자문사-제도는 뉴욕 주를 시작으로 약40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현재 33개주가 운영하고 있다. 동분야의 미국의 다양한 경험과 연구는, 동제도의 한국에서의 현재 및 장래 파급효과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우리에게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최 경 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9) 일례로, 동성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텍사스 주법(anti-sodomy act)의 위헌성을 다룬 Texas v. Lawrence (543 U.S. 551, 2005) 판결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텍사스 주법의 수정헌법 제14조 상 적법절차(Due Process Clause) 위반여부를 검토하였다. 동 판결에 대한 결정의 과정에서 동법원은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의 Dudgeon v. United Kingdom 판결상 법리를 인용하였다.

20) 연방대법원 Antonin Scalia 대법관과 Stephen Breyer 대법관 간의 대담문 중, Transcript of Discussion Between U.S. Supreme Court Justices Antonin Scalia and Stephen Breyer at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U.S.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Discussion (Jan. 13, 2005).

21) Kyungho Choi, Pluralism Anxiety and Globalization: Development of Constitutional Law in the New Framework, 37 Suffolk Transnational Law Review, 19-22 (2014).



참고문헌

The State Bar of California, Office of Admissions, Foreign Legal Consultant Program (Feb. 2014).

Kyungho Choi, Pluralism Anxiety and Globalization: Development of Constitutional Law in the New Framework, 37 Suffolk Transnational Law Review, 19-22 (2014).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Appellate Division: Second Judicial Department, How to Apply for Licensure as a Foreign Legal Consultant, available at <https://www.nycourts.gov/courts/ad2/pdf/How%20to%20Apply%20for%20Licensure%20as%20a%20Foreign%20Legal%20Consultant.pdf>.

Transcript of Discussion Between U.S. Supreme Court Justices Antonin Scalia and Stephen Breyer at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U.S.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Discussion (Jan. 13, 2005).

Roger J. Goebel, Professional Qualification and Educational Requirements for Law Practice in a Foreign Country: Bridging the Cultural Gap, 63 Tulane Law Review 443, 447(1989).

Sidney Gribetz, Legal Consultants in New York, The Bar Examiner, p.6-9, May 1998.

Carole A. Needham, The Licensing of Foreign Legal Consultants in the United States, 21 Fordham International Law Journal 1126 (1997).

In Re Roel, 3 NY 2d 224(1957).

Masako C. Shiono, Foreign Attorneys in Japan: The International Practice of Law as a Question of Unfair Trade Practices, 2 American University International Law Review 615 (1987).

Jennifer Smith, Global Law Firms Chart Slow But Steady Growth, The Wall Street Journal Law Blog, Sept, 29, 2014, available at <http://blogs.wsj.com/law/2014/09/29/global-law-firms-chart-slow-but-steady-growth/>.

Laurel S. Terry, Admitting Foreign-Trained Lawyers in States Other than New York: Why It Matters, The Bar Examiner, p.40, December 2014.